

#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김 선 이 (Kim, Sun-Ihee)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조교수  
Professor, Hankuk Aviation Univ.

- I. 서 론
- II. 우주손해책임협약
- III. 각국의 우주관련법과 손해배상보험제도
- IV. 결 론

##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sup>1)</sup>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한국의 우주 산업분야를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도록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법적 지원책으로 우주법 또는 우주활동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법을 제정할 때에는 우주활동에 관계되는 공법적 사항과 사법적 사항을 조문화하여 규정하여야 되는데 공법적 사항으로는 입법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국내 외에서의 우주활동(발사)에 대한 허가, 우주물체(인공위성 등)의 등록 및 등록부비치, 우주비행의 관리 및 통제,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 수색, 구조 및 해결, 우주사고처리 위원회의 구성, 우주활동에 대한 안전확보, 우주분야의 인재양성(교육 및 훈련포함)과 우주비행사의 양성(법적 지위부여), 우주활동 및 우주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부여, 우주물체의 제조와 우주간접자본 지상시설의 확충, 우주개발기금의 조성, 가칭 국영 한국우주개발공단의 설립, 우주관계 국제조약의 준수와 국제협력 등이다. 동법 제정시, 사법적 사항으로는 우주물체의 각종 사고(로켓발사사고, 우주파편의 낙하)에 기인된 손해배상책임, 우주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기 위하여 우주활동 허가시 신청자의 의무적 책임보험가입, 시행일 및 경과부칙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sup>2)</sup>

본 글에서는 우주법에 제정되어야 할 내용의 사법적 사항 중 우주물체의 각종 사고(로켓발사사고, 우주파편의 낙하 등)에 기인된 손해배상책임, 특히 제3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우주손해책임협약을 내용을 고찰한 후, 각국의 우주관련법 중 손해배상과 보험부분을 소개하고 나아가 우주사고시 피해자(특히 제3자)의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우주물체 발사국인 가해자의 책임의 분산을 위한 우주책임보험제도를 살펴본다.

---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조교수

1) 세계일보(인터넷), 2002년 11월 28일

2) 김두환, 항공우주법제정의 필요성, <http://www.edu.co.kr/doohwank>

우주법 제정에 앞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과학적 탐사와 우주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안에서도 제14조와 제15조<sup>4)</sup>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II. 우주손해책임협약

우주물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우주물체 발사국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책임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sup>5)</sup>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일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기준으로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있다. 그러나 우주물체에 의한 발사사고는 특수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주책임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주물체<sup>6)</sup>의 발사로 인한 지구표면의 손해와 비행중인 항공기의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케 하고 있다.

- 
- 3) 제14조(우주물체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①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우주물체를 이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주물체의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인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장소에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우주물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1항이 준용된다. 다만 발사가 행해지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발사시설 또는 용역의 제공자 국적 국가의 법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 따른다. ③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우주물체를 이용하여 우주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 1항이 준용된다. 다만 당해 우주물체의 허가 또는 등록국가의 법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 4) 제15조(손해배상책임의 부보)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국내발사 허가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보될 보험금액의 최소한도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 5) 이하에서는 우주책임협약 또는 책임협약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 6) 인공위성, 우주선, 우주파편 등

## 1. 책임요건

우주책임협약상 발사국은 자기의 우주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상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의 책임요건의 의미를 고찰한다.

### 가. 손해

협약상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책임협약 제1조<sup>7)</sup>에서 “손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손해의 개념 속에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손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해산정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협약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직접손해이외에 간접손해<sup>8)</sup>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신체적 손해이외에 정신적사회적 복지침해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sup>9)</sup>. 우선 인적 손해의 사망의 의미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침해”의 해석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손해의 개념 속에 신체적 상해와 질병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sup>10)</sup> 비육체적인 손해나 질병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WHO 현장에 의하면 “건강이란 완전한 육

- 
- 7) 책임협약 제1조: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other impairment of health;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States or of persons, natural or juridical, or property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he term "launching" includes attempted launching; The term "launching State" means: a state which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 space object; a State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 space object is launched; The term "space object" includes component parts of a space object as well as its launch vehicle and parts thereof.
  - 8) 협약안을 준비논의하는 동안 몇몇 대표들은 간접손해에 대한 문제는 실무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결국 배상은 국제법 및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책임협약 제12조).
  - 9)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은 간접손해나 정신적 손해도 조약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즉 손해를 광의로 해석하여 원인행위와 결과발생과를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례별로 판단한다는 견해와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취하면서 정신적 손해나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조약상 손해의 정의가 유형적(물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발사국의 국내법의 적용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要林忠南, 解說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23 – 24面).

체적·정신적·사회적 복지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한 상태의 부재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침해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복지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손해이든 간접손해이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적 손해중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sup>11)</sup>. 그러나 간접손해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사고는 일반적으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인적손해로 인해 인적 손해의 직접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받은 경제적 상실이익인 간접손해가 협약상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다. 예컨대 피용자가 우주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결근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손해이외에도 간접손해의 예로는 재산 그 자체의 가치적 손해이외에 그 재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상실이나 사업상의 장애로 인한 상실이익,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의료비 등이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국가에 따라 취하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가 다름을 이유로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대해 A국의 국민은 배상을 받고 B국의 국민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배상결정에 있어 정의와 공평을 모토로 하는 협약의 정신<sup>12)</sup>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의 간접손해도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또한 전파방해 등 비유형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도 협약제정시 약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 협약에서는 원자력 손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당초 이 협약 안의 기초 단계에서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Cosmos 954호(원자력을 장치한 인공위성)의 낙하사고 당시 캐나다가 취한

10) 예컨대 우주물체의 파편이 사람을 강타, 그로 인해 팔이 절단되고 나아가 파상풍에 감염되어 질병을 얻게 된다면 이는 건강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11) 예컨대 우주물체가 가속에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접손해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2) 책임협약 제12조 참조: The compensation which the launching State sha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n order to provide such reparation in respect of the damage as will restore the person, natural or juridical,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on whose behalf the claim is presented to the condi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damage had not occurred.

피해방지조치(정화작업포함)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잠재적인 손해의 예방조치는 우주손해책임협약의 손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이와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었다<sup>13)</sup>.

앞으로 UN의 우주평화이용위원회에서 우주책임협약을 개정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의 범위에는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간접손해의 범위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발사·발사국

##### 1) 발사

우주활동은 우주물체의 발사에서 시작되어 우주물체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이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우주활동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물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우주물체를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국의 발사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협약상 “발사”的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발사는 시도된 발사(Attempted launching)”를 포함한다<sup>14)</sup>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사와 시도된 발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발사의 의미속에는 시도된 발사 이외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실패로 끝난 발사에 의해서 야기된 손해는 협약상 배상의 대상이 된다. 협약 제7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발사는 절차로 시작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시도된 발사를 발사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협약적용을 발사의 성공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발사의 의미는 그 것이 시험발사이든 실제의 배치를 위한 발사이든 엔진이 시동되는 순간부터 그 후의 모든 단계가 포함되도록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2) 발사국

우주물체의 발사는 국가, 개인(법인을 포함), 국제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발사주체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궁극적 귀속주체는 국가

13) 要林忠南, 解說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23面 이하

14) 책임협약 제1조: The term "launching" includes attempted launching.

인 발사국이므로 발사국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협약상 발사국이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국가, 발사행위를 조장하는 국가<sup>15)</sup>, 우주물체가 발사되는 영역의 국가,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된 시설의 소유국을 의미한다.

#### 다. 우주물체

우주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 책임협약은 우주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그 책임의 기초로 하고 있다. 협약상 “우주물체에는 발사체와 그 부품만 아니라 우주물체의 구성품이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용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우주물체이기 위해서는 그 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반드시 지구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것만이 우주물체인가하는 의문이다. 우주물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은 발사국이 지는 것이므로 우주물체의 의미를 발사행위와 관련시켜서만 본다면 우주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지구로부터 발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책임협약의 명칭은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이지 우주로 발사되어진 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사행위와 관계없이 외계의 물질로 우주공간에 건설되거나 조립된 물체는 우주물체로 보는 것이 협약의 목적상 합리적이다.

### 2. 협약상의 책임유형

책임협약은 우주활동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2조에서 제6조에 걸쳐 ① 무과실책임 ② 과실책임 ③ 연대책임 ④ 책임면제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항은 책임협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가. 무과실책임

책임협약 제2조<sup>16)</sup>는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지상 또는 비행중인 항

---

15) 여기에는 발사비용을 제공하거나 발사를 요청하거나 자국민이 발사자금을 제공하거나 발사를 지원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공기”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우주활동으로 생긴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은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의 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느냐 아니면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주과학의 비상한 발달은 우주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위험을 초래 한다. 위험성있는 활동에서 생긴 손해는 그 행위자가 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맞는다. 무과실책임주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엄격한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현재의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서라도 손해가 생겼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가령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이 경우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이다.

특히 무과실책임은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무엇이 위험성이 높은 것인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 가겠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이나 전기·가스시설, 생·화학공장, 핵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의 기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손해의 합리적인 처리로 과실책임주의가 갖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있다.

협약 제2조는 국제협약상 명문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실정규범이다. 일반적으로 책임은 과실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위의 성격이 지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와 관계없이 책임이 발생한다.

우주활동과 같은 초위험성<sup>17)</sup>을 안고 있는 활동이 허용되는 이유는, 우주활동은 그 초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위험과 유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과실책임제도가 선택된 것이다. 과실책임을 넘어 무과실책임을 선택하는 원동력은 그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의 정도이다.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수준을 넘는

16) 책임협약 제2조: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17) 초위험적인 행위(ultra – hazardous)는 그 행위가 위험을 실현시킬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에서의 초위험성이라기 보다는 위험의 실현이 예외적이고 거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의와 곤란을 회피할 수 있다면 결과적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다면 대중이 갖는 유일한 법적 보호장치는 무과실책임제도이다.

위험요소이외에도 무과실책임을 택한 이유로는 첫째, 책임질 수 있는 행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둘째, 각국의 우주프로그램이 비밀에 싸여 있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셋째, 도덕적인 요소로 고도로 그리고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나아가는 자는 그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상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는 장소적으로 지표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다. “지표”란 육지, 바다,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비행중인 항공기”란 공중에 배치된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과실책임

책임협약 제3조18)는 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지표이외의 곳 다시 말해 우주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거나 전자기적 간섭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주물체 발사국들 상호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이다.<sup>19)</sup> 발사국을 달리하는 우주물체들 간의 충돌의 경우 발사국 상호간의 책임관계는 오로지 과실책임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협약에는 과실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전통적으로 과실책임은 어떤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의 정도를 다하지 못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우주활동의 경우에는 이 같은 설명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주활동에 위반하면 과실이 되는 행위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발사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발사국이 회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위성을 방치하거나 ② 정치 궤도에서 요구되는 위성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③ 비활동위성을 쳐분궤도에 배치하지 않거나 ④ 우주쓰레기의 발생을 완화시키지 않거나 ⑤ 우주활동으로 발생하는 우주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0).</sup>

우주에서 우주물체들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과 위험의 수용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대등하기 때문이다.

19) 1980년의 추정에 의하면 활동하고 있는 위성끼리의 충돌가능성은 9천만년에 한번 정도 이던 것이 우주물체의 증가에 따라 1984년에는 27000년에 한번, 같은 속도로 우주물체의 양이 증가한다면 1990년부터는 매년 1회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 H.A. Baker, "Liability for Damage Caused in Outer Space by Space Refuse"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ol. 12. 1988. pp.183 – 192.

지상피해자와는 달리 우주물체들을 발사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활동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실책임이든 무과실책임이든 모든 책임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발사국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발사국 확인이 불가능한 우주쓰레기에 의한 희생자는 실제로 구제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설치와 발사국들이 특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연대책임

책임협약은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협약 제4조<sup>21)</sup>가 규정하고 있는 즉 어느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그 우주물체상의 사람 또는 재산이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지상이외의 곳에서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 제3국 또는 제3국의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앞의 두 국가는 제3국에 연대책임을 진다. 예컨대 우주공간에서 A발사국의 우주물체와 B발사국의 우주물체가 충돌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C국이나 C국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A·B 양국은 C국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3국의 손해가 지상이나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한 때에는 무과실책임

---

21) 책임협약 제4조: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and of damage thereby being caused to a third State or to it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the first two State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third State, to the extent indicated by the following: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the third Stat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absolute;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a space object of the third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that space object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based on the fault of either of the first two States or on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either is responsible. In all cas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urden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apportioned between the first two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at fault; if the extent of the fault of each of these States cannot be established, the burden of compensation shall be apportioned equally between them. Such apportion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third State to seek the entire compensation due under this Convention from any or all of the launching States which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을, 손해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지게된다. 연대책임을 지는 모든 경우에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과실이 범위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그들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담은 연대책임을 지는 어느 국가나 모든 국가로부터 완전보상을 구하는 제3국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협약은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경우이든 손해의 피해국은 어느 발사국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협약 제5조<sup>22)</sup>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우주물체를 발사한 경우에는 그들은 언제나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공동발사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는다. 공동발사에 참여자들은 상호 그들의 분담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협정은 제4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공동발사의 경우 우주물체가 발사된 영역국 또는 시설국은 공동발사에 있어 참가자로 간주된다.

#### 라. 책임의 면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든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든 자기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제에도 권리가 있는 곳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지상이나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이 무과실책임을 진다. 그러나 발사국의 책임협약 제6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무과실책임으로부터의 면제는 피해자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발사국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면제란 무과실책임으로부터의 면제이다. 본 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전환시킨다.

---

22) 책임협약 제5조: Whenever two or more States jointly launch a space object,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ny damage caused. A launching State which has paid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a claim for indemnification to other participants in the joint launching. The participants in a joint launching may conclude agreements regarding the apportioning among themselves of the financial obligation in respect of which the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uch agre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sustaining damage to seek the entire compensation due under this Convention from any or all of the launching States which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 State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 space object is launched shall be regarded as a participant in a joint launching.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발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과실책임의 경우에는 발사국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무과실책임의 면제는 피해자 측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발사국의 행위가 특히 UN현장,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발사국에 책임면제를 부여하지 않는다<sup>23)</sup>. 그리고 면제는 발사국이 청구자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범위까지 인정된다.

### 3. 손해배상 청구절차

책임협약은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에 대하여 제8조에서 제20조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대해서는 협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제일 먼저 손해를 입거나 또는 자국민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국가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적국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영주지국이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로는 ① 손해가 발생한 국가 ② 개인피해자의 국적국 ③ 개인피해자의 영주지국이 있는 셈이며 개인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국적국 – 손해발생지국 – 영주지국 순서로 할 수 있으며 전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후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함으로서 청구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배상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외교채널을 통해 발사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3국이나 UN 사무총장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을 통할 경우에는 청구국과 발사국이 모두 UN 회원국이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또는 우주물체의 발사국을 확

23) 책임협약 제6조제2항: No exoneration whatever shall be granted in cases where the damage has resulted from activities conducted by a launching State which are not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 particula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인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국은 상당한 기간동안 자국에 발생된 손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2항은 손해의 발생이나 발사국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적절한 주의의무의 행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주활동은 초위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가 상당한 기간동안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sup>24)</sup>.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제10조제3항은 손해의 전 범위가 알려진 후 1년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만료후 청구를 수정하고 추가적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약 제11조에서는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내적 구제를 다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국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청구절차가 신속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국의 개인은 발사국에 대해 발사국의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동조 제2항은 구제절차가 이미 발사국의 국내법체계 내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발사국에 대한 피해국가의 청구제기를 금함으로서 피해국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들로 하여금 청구기회를 갖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피해자는 국가와 동떨어져 국내적 구제절차를 택할 수도 있다.

협약 제12조에서는 발사국이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지불되어야 할 배상액은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정도의 것이다. 동조에서 배상은 국제법과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해결하고 있다.<sup>25)</sup> 협약 제13조는 배상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전배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통화가 원칙이고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통화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협약 제14조에서 제20조 까지는 청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 따

24) 예컨대 핵추진 위성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나 비핵추진위성이 화학공장이나 핵시설에 추락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수년동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25) 이에 대하여 협약안 작성시 이탈리아 대표는 책임의 일반원칙에 있어서 정의와 형평을 고려함은 (손해배상)중재 위원회가 손해를 야기한 국가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제도를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협약에 규정하는 입장은 취했으며 불가리아 대표는 손해배상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의와 형평의 원칙은 부차적인 것이며 이는 국제법의 원칙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I.H. Ph. Diederiks - Verschoor,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1993, p.35).

라 외교교섭을 통해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국이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음을 발사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구로 청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sup>26)</sup> 제14조는 청구위원회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의 설치요구는 선택적이지만 한 쪽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타 당사자의 동의는 의무적이다.

청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설치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인씩 임명한다. 의장은 합의로 선출된다. 위원회 설치 요구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장선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 쪽 당사자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UN 사무총장에게 의장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sup>27)</sup>. 당사자 한쪽이 기간 내에 위원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은 1인 위원 청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치할 장소와 기타 모든 판결과 심판은 다수득표에 의한다<sup>28)</sup>. 제17조는 청구국이나 발사국이 복수인 경우에도 집단으로 1인의 청구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위원회는 청구의 시비를 가려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sup>29)</sup> 그러나 제18조는 책임을 일정액으로

26) 책임협약 제14조: If no settlement of a claim is arrived at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Article IX,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ant State notifies the launching State that it has submitted the documentation of its claim, the par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a Claims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27) 책임협약 제15조: The Claims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one appointed by the claimant State, one appointed by the launching State and the third member, the Chairman, to be chosen by both parties jointly. Each party shall make its appointment within two months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If no agreement is reached on the choice of the Chairman within four months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appoint the Chairman within a further period of two months.

28) 책임협약 제16조: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make its appoint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the Chairman shall,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ingle-member Claims Commission. Any vacancy which may arise in the Commission for whatever reason shall be filled by the same procedure adopted for the original appointment.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place or places where it shall sit and all other administrative matters. Except in the case of decisions and awards by a single-member Commission, all decisions and award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y majority vote.

제한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국가도 수십 수백억 달라에 이르는 재정적 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약을 개정하여 의무적 보험이나 국제기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판결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심판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들은 그것을 선의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판결과 심판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sup>30)</sup>. 위원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위원회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한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이나 심판을 내려야 한다<sup>31)</sup>. 위원회는 판결이나 심판을 공표하여야 하고 당사자들과 UN사무총장 앞으로 판결이나 심판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협약 제20조는 위원회의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부담도록 하고 있다.

#### 4. 소결

책임협약은 우주활동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책임관계는 전적으로 국내법에 맡기고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주활동에서 비롯되는 책임 문제는 우주물체 발사국과 우주물체 이용자 즉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발사국과 우주물체 이용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책임협약은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우주활동의 사영화가의 점차 활발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다면 발사국과 우주물체 이용자간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관계를 규율할 국제입법을 따로 마련하거나 책임협약을 보정하여 법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 책임협약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행

29) 책임협약 제18조: The Claims Commission shall decide the merits of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if any.

30) 책임협약 제19조제2항: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otherwise the Commission shall render a final and recommendatory award, which the part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The Commission shall state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or award.

31) 책임협약 제19조제3항: The Commission shall give its decision or award as prompt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unless an extension of this period is found necessary by the Commission.

위로 된 우주활동과 결과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약의 대상으로 된 손해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구체를 위하여 의무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기 책임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제도에 대하여 주요 우주활동국을 중심으로 우주사고(인공위성발사사고 등)와 관련된 특히 제3자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I. 각국의 우주관련법과 손해배상보험제도

#### 1. 미국

미국의 경우, 우주관련법에는 국가항공우주법, 우주상업화촉진법, 상업우주법 3개의 법이 국가의 우주관련 정책방향 및 우주기술의 상업화 추세에 호응하여 수립된 원칙들과 상업화 추진의 주체와 여러 활동에 대한 허가, 제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항공우주법은 우주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이며 NASA의 설치근거법이다. 국가항공우주법 제308조는 우주물체 발사에 관련하여 손해발생시의 보험과 배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32)</sup>

32) 국가항공우주법 제308조(보험과 배상금)

- (a) 행정당국은 발사, 작동 또는 우주선의 복구와 관련된 행위에 기인한 사망, 상해,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당한 제3자에 의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할 우주선의 사용자들에게 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건과 적정한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행정당국이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그러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비는 이 법을 제203조 (c) 항에 준하여 설립된 상환정책에 의하여 사용자에 의해 실행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로 상환되어야 한다.
- (b) 이 조항에 따른 규정 하에 사무청장이 책임보험의 비용과 기한의 유효성을 고려함에 따라, 사무청과 우주선의 사용자간의 협정은, 미국은 사용자에 대하여 발사, 작동 또는 우주선의 복구와 관련된 행위에 기인한 사망, 상해,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당한 제3자에 의한 소송(소송 또는 판결의 합리적인비용을 포함)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단 이 배상금이 사용자의 사실상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 이외의 결과에 의한 소송에 국한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보험에 의해서도 배상되지 않는다.
- (c) (b)항에 의하여 배상금 제공하는 협약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선에 의하여 발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험에가입할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금액은 NASA가 지정하게 된다. 지급된 보험금액에 의하여 배상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헐거나 또는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연구개발비에서 헐어 NASA가 그 부족분을 지급하게 된다<sup>33)</sup>.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1994년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에 의하여 인공위성발사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제3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법은 위성발사를 허가받은 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못할 시에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된다. 이에 관한 보험금액은 최대 5억 달러이다. 미국이 1984년 상업우주발사법을 제정할 당시 보험금액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성발사업체들은 무제한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음으로 발사산업의 육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 상업우주발사법을 개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최대 5억달러를 초과하는 손해가 지상 제3자에게 발생된 경우에 국제책임을 부담하는가 또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배상금액도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 한도액은 15억 달러이다. 민간부분에서 준비된 보험 등에 의한 배상책임을 초과하는 제3자 손해

- (1) 사망, 상해,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 대한 고소 또는 소송의 통보
  - (2) 소송 또는 고소에 대해 미국에 의해 수행되는 변호에 대한 통제 또는 협조
  - (d) 사무청장이나 또는 그의 지정인이 금액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 한 (b) 항에 의하여 아무런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e) 사무청장이 선택할 때, 사무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연구나 의무적인 발전에 사용하는 기금 또는 그러한 지불을 위해 준비된 기금을 통하여 (b) 항의 배상은 지불된다.
  - (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우주선”이라는 용어는 우주왕복선과 기타 관련 장비, 장치, 부품, 부속품 전부를 의미하는 우주운송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발사를 위해 만들어진 물체, 외계에서 발사되었거나 조립된 물체를 의미한다.
  - (2) “사용자”라는 용어는 우주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행정당국과 협정을 맺은 자, 우주선에 설을 재산을 소유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우주선에 탑승할 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제3자”는 사망, 상해,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33) 실제로 부보된 금액은 항상 그 상한을 5억달러로 하는 것은 아니며 5억달러로 부보를 하는 것은 우주선을 발사하는 경우뿐이며 소모형 로켓 경우 예컨대 Lockheed Martin사의 Atlas로켓 경우 1억6천만 달러 정도이며 Titan 로켓인 경우에는 2억 1천만 달러정도이다. 이 금액의 차이는 Titan 로켓이 보다 성능이 좋은 발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두환,인공위성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법적고찰,<http://www.edu.co.kr/doohwank>).

배상이 필요로 하였을 경우 대통령은 국가에 의한 보상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를 받기 위하여 이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출되는 보상계획은 지급총액을 개산하고 그 배상지급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고려하여 추가로 입법조치 등이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입법조치도 강구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상계획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회는 신속하게 이 계획을 심의한 후 승인결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심의기간 또는 토의에 걸린 시간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배상한도를 국제법상 요구되고 있는 무제한으로부터 일정한 금액 15억달러<sup>34)</sup>까지 인하할 때에는 민간부분의 활동에 대한 정부보상에 공적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보험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제한을 설정할 수가 있다.

## 2. 러시아

러시아는 1993년의 러시아 연방우주활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총칙, 우주활동의 기구, 우주활동에 대한 경제적 조건, 우주간접자본, 우주활동에 대한 안전, 국제협력, 책임 등 6개절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제25조에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과학과 국가 경제를 위하여 기관 및 시민이 스스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우주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러시아 연방법률에서 정하여져 있는 금액으로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 의무적인 보험의 보험금액은 제3자에 대한 재산의 멸실에 대하여 충당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동규정에 의하여 우주사고(인공위성 발사 등)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률상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에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35)</sup>

34) 미국이 설정한 배상한도액인 15억달러를 1달러당 1174원(2004년 6월9일 현재 환율)으로 환산하면 17,610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얼마만큼 현실로 발생된 손해의 규모와 합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보다 위험성이 높은 원자로탑재위성의 낙하사고에 관련된 경비지급이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35) 러시아연방우주활동법 제30조(손해에 대한 책임)  
 1.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른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보장한다. 2.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관련된 우주산업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시민에 의해 배상된다. 만일 이러한 손해가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과실의 결과라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해당기관이나 시민이 부담한다. 3. 외계를 제외한 러시아연방의 영토 또는 주의 관할권 밖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부터 가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지구 표면을 제외한

### 3. 유럽

유럽에 있어서의 우주개발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우주기관(European Space Agency: 이하 ESA라 약칭함)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주공간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에도 ESA가 개발한 Ariane로켓에 의한 업무가 제공되고 있다. 아리안스페이스사가 ESA에 맡고 있는 각국의 우주관련기업과 유럽의 주요 은행 및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로부터 자본금을 거두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아리안스페이스사는 프랑스법인이지만 ESA와 직결된 특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안 로켓발사에 관계된 손해배상제도를 정한 것은 「아리안 발사기의 생산단계에 관한 유럽 여러 나라 정부들 간의 b선언(1980년)」이 있다. 이 선언 제3조제8항에 의하면 아리안 스페이스사는 사고발생 때의 배상에 관한 비용으로 4억프랑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리안발사기의 발사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있어 아리안 스페이스사 1회의 발사에 대하여 4억프랑의 상한으로 당해 손해배상에 관련된 비용을 프랑스정부가 상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아리안 스페이스사가 4억 프랑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지금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하여진 배상금액은 미국에서의 최대보험금액 5억달러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금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던 소모형 발사로켓 아리안 4호를 위한 것이었고 보다 대형인 발사능력을 가진 아리안 5호에 관하여서는 보험금액을 재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아리안 4호는 정지천이궤도로의 발사능력이 약 4톤이지만 아리안 5호는 6.8톤의 발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국의 자상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에 프랑스는 배상지급에 관한 국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배상지급 내에서 4억프랑 까지는 아리안스페이스사가 마련하고

---

어떤 장소에서라도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 또는 다른 우주물체에 의해 그러한 우주물체 내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이나 시민의 과실은 그들의 과실과 그 과실에, 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한 단체 또는 시민에 대한 바율로 나타나야 한다. 다수의 기관이나 시민이 수반된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로 인해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든 기관과 시민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은 그들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배분된 거래자들에 대하여 또는 균등한 책임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4.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에 참여하는 기관과 시민의 책임은 보험총액 또는 우주산업과 우주활동에 연관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계약이 제공하는 손해보상에 국한된다. 만약 보험총액 또는 손해보상이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한 보상에 불충분하다면, 러시아연방법으로 명기된 방법에 의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민의 재산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

있는 제3자 손해배상보험에 의하여 지불되고 있다. 이 보험금액 4억프랑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가 우주손해책임협약상의 국제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우주활동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8개장과 17개절 그리고 11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4장에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sup>36)</sup> 또한 동법 제3장 제7절 제47조 이하에서 우주사고

36) 그 내용은 제4장1절에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3조의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주물체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사시설에서 발사된 경우 또는 우주물체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가 발사국인 경우 그리고 발사를 위한 책임기간 동안 손해를 입은 경우, 물체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 내·외에 귀환한 경우 그리고 귀환의 책임기간 동안 손해를 입은 경우이며 전술한 경우를 전제하여 그 손해가 지구상, 공중, 또는 우주에서 발생되었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내 또는 외의 지역에 발생된 경우 그리고 발사 또는 귀환에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 그리고 발사 또는 귀환이 면책 증명서에 포함된 경우이다. 제64조에서는 우주물체에 의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장에서 적용하고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는 오직 제4장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가 관습법(책임에 관한 관습법), 또는 국제법하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참조: 이 절은 이장에서 적용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 법 외의 배상을 추구하는 3자 예를 들면,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법 제65조는 기권에 관한 규정으로 제4장이 적용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해 발사 또는 귀환에 관련된 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권리, 그리고 그들의 피고용인들, 계약자들, 또는 하청인들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장2절에서는 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그 범주를 나누어 우선 발사 및 대부분의 귀환에 의한 손해에 대한 규정으로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다. 우주물의 발사 또는 귀환의 책임자는 지구상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가하여진 손해의 결과로 제3자에게 야기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단 가해자는 3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관여한 제3자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막론)의 결과로 생긴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우주물체의 발사 또는 귀환의 책임자는 지구상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대한 손해 및 제3자에 의해 발사되었거나 작동된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 제3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책임자 또는 관련된 자의 실수로 인한 우주물의 내부의 손해 경우에도 그 우주물체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사허가 또는 면장소지자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두 번째 범주는 외국에 의해 지휘된 특정 귀환물에 대한 규정으로 제70조,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70조에 의하면, 다음 경우의 우주물체의 귀환에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주물체가 야기한 손해에 적용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발사 설비로부터 발사된 물체 또는 그 물체의 어떤 부속 물도 아니며, 귀환에 대한 가해자가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아닌 경우이다. 제71조에서는 그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귀환에 대한 책임자는 우주물체가 제3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정하고 있다.<sup>37)</sup>

불할 책임이 있다.

본장의 제3절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연방법원이 사법권(재판권)을 가진다. 배상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이거나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몰랐을 때, 그 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 또는 그 자가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손해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다. 만약,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는 ① 외국의 국가가 발사하거나, 국제발사면장, 동법 제43조의 공인, 또는 면제증명서와 관련된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배상금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소송에 참여한 경우와 ② 외국에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고소상 손해의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장의 제4절은 외국에 의하여 청구된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제74조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따른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즉 외국의 국가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소송에 참여한 경우,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을 경우와 관련된 발사 또는 귀환의 책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다음의 금액 중의 적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배상금의 금액과 만약, 관련된 우주물체의 발사나 귀환이 발사하거나 또는 국제발사면장, 그리고 제69조의 적용에 의해 인정되었다면, 허가 또는 면장에 보증된 금액(참조: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이미 이 장에 의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외국국가는 관습법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다. 제75조는 소송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관습법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제기된 소송을 판결하기 위해 소송위원회의 성립이 필요하다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 관습법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성립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또는 관습법이 규정하는 대로 위원회가 재정(재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37) 오스트레일리아 우주활동법 제3장 제7절 보험 및 재정적인 요건

#### 제47조(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종족)

- 위해 (1) 이 절은 3, 4, 5절에서 언급되었던 보험 및 재정적인 요건을 명백히 한다.  
 (2) 발사 허가, 국제 발사 면장의 소지자 또는 발사와 귀환을 다루고 있는 제43조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 발사와 귀환에 관하여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종족한다.  
 (a) 발사 또는 귀환에 대한 책임기간을 통하여, 제48조의 보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당해 소지자가 발사나 귀환에 관하여 제48조제3항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인 발사 또는 귀환에 대해 직접 재정적인 책임을 부담한 경우.

#### 제48조 보험요건

- (1) 보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발사허가에 의해 인정된 발사 또는 귀환
  - (b) 제43조에 의거하여 인정된 귀환
  - (c)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가 발사 또는 귀환으로 야기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금은 지급해야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 (d)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조 1: (c)와 (d) 항에서 언급한 보험은 분리된 정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그에 갈음하여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는 당해

## 5. 일본

일본의 우주개발은 1968년에 우주개발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아폴로 11호가 달표면 착륙에 성공한 1969년에 우주개발사업단이 발족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목표로 본격적인 각종 대형 로켓, 위성 및 우주선 개발에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하여 발사사업에 관련되는 보험가입의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것은 일본의 인공위성발사 로켓개발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위가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미·일간의 약정에 의하여 미국기술이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일본제 로켓을 이용하여 외국위성에 대한 상업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업목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발사는 국가기관에 공공목적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왔으나 이러한 일본의 우주정책은 평성10년(1998년)에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발사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제3자 책임제도를 참작하여 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로켓을 이용하겠다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보험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었다. 당초 H-II A로켓<sup>38)</sup>을 사용하는 발사업무계획이 미국의 기업

---

소지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둘 다 보증하는 단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조 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 이 항에 의거 어떠한 보험도 선택할 의무가 없다. 즉, 그 부담은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에게 지워진다.)

- (2) 보험 요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손해에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하여 발사로 야기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제 발사 면장에 의해 인정된 발사에 의해 충족된다.(참조 1: 허가서의 소지자는 당해 소지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둘 다 보증하는 단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조 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 이 항에 의거 어떠한 보험도 선택할 의무가 없다. 즉, 그 부담은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서의 소지자에게 지워진다.)
- (3) 관련된 각각의 발사 또는 귀환에 관하여, 총 보험금은 7억5천만 달러의 금액과 다음의 금액 중의 적은 쪽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 (a) 법규에서 이행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발사나 귀환 도중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발생가능한 손해의 최대한의 금액
  - (b) 만약 그 법규가 이 항의 취지를 위한 최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이행시킬 때, 즉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 결정된 금액

38) 일본은 1994년 자력으로 H-II 로켓 개발과 발사가 성공함으로서 일본의 발사업은 상업목적을 위한 발사도 그 활동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다. 2002년 2월 4일 일본은 자력으로 지상으로부터 36,000Km 상공에 있는 정지궤도에 2톤급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본산 H-IIA로켓 2호기(직경4m, 높이 53m)를 개발하여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

(Hughes Co. 및 Loral Co.)과 평성8년(1996년)에 체결된 바 있으므로 지상 제3자 손해배상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일본의 제3자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은 배상보험조항을 포함하는 우주활동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우주개발사업단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상 및 책임보험제도를 정비하는 형태를 택하였다.

다른 나라의 우주활동에 의하여 일본국민에게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과의 조정문제에 대하여 이미 일본은 우주손해책임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각의 양해문서에 의하여 국내체제가 정비되었다<sup>39)</sup>.

일본은 미국, 영국 및 러시아 등과 같이 자국 내에서의 우주활동 전반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진 우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일본의 우주개발의 주된 활동체로서 우주개발사업단의 설립준거법인 우주개발사업단법을 개정함으로서 제3자 손해배상제도의 정비를 하였다<sup>40)</sup>. 그 개정 내용은 우주사업단의 발사업무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은 우주개발사업단이 아니라 주무대신에게 속하게 한 것이다.<sup>41)</sup>

일본의 최신형 발사로켓인 H-II인 경우 제3자 손해배상보험의 약정금액은 일화

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사업단은 H-IIA 로켓 개발에 약 5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며 2001년 8월과 2002년 2월 두 번의 시험비행을 성공케 하였다. 일본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H-IIA로켓의 3호기가 2002년 9월 10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본격적인 위성을 발사하는 실용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이 H-IIA로켓은 각종 대형 무거운 탑재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본의 대형주력로켓이다. 이 번에 발사한 H-IIA로켓의 3호기에는 고체로켓 부스터와 그 밖에 고체보조로켓 4개를 이용하여 발사하였다. 또한 이 H-IIA 로켓은 액체산소와 액체수소를 추진제로 하는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의 각각의 궤도에서 페이로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으며 최신 기술 및 저렴한 가격면에서 볼 때에 세계의 톱크拉斯에 해당되므로 일본이 뽑내고 있는 것이다.

39) 이 양해문서에 의하면 발사 내지 낙하사고에 의한 손해조사를 과학기술청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학기술청에 대하여 손해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청은 가해국에 대한 보상청구액과 교섭한 결과 합의한 배상액의 내용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40) 우주개발사업단법은 1969년(소화 44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사업단의 설립, 조직, 업무, 재무 및 회계,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동법은 평성10년(1998년) 6월에 개정하였는데 그 주된 개정 내용은 「제3장의 2 인공위성 등의 발사에 의한 손해배상 조치」라는 장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수탁발사에 관한 특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여기서 말하는 주무대신이란 문부과학성대신, 국교교통성대신 및 우정사업청장관의 3명을 의미한다.

200억 앤이다. 일본의 발사업무는 두 개의 단체<sup>42)</sup>에 의하여 사실상 독점되고 있다. 즉 H-II로켓을 조달한 로켓시스템사는 그 발사를 우주개발사업단에 위탁하고 있다. 발사를 수탁받은 우주개발사업단은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발사를 하고 있다. 로켓시스템사와 우주개발사업단에 의하여 일본의 로켓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3)</sup>.

#### IV. 결 론

상기에서는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우주파편 등)의 발사시 돌연한 사고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즉 우주사고시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우주손해책임협약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였고 특히 선진국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28일 충남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 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고찰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우주물체 발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주물체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발생시에 손해배상 규정과 그를 위한 의무적인 보험규정 등을 두고 있다.

본 글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 제15조에서는, 보험가입은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

42) 두 개의 단체라고 함은 민간기업인 로켓시스템주식회사와 국영기관인 우주개발사업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김두환, 인공위성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법적 고찰, <http://www.edu.co.kr/doohwank>

에서 발사할 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과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초 록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 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과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Abstract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 compensation which the launching State sha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n order to provide such reparation in respect of the damage as will restore the person, natural or juridical,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on whose behalf the claim is presented to the condi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damage had not occurred.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and of damage thereby being caused to a third State or to its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the first two States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third State, to the extent indicated by the following: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the third Stat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absolute; If the damage has been caused to a space object of the third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that space object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heir liability to the third State shall be based on the fault of either of the first two States or on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either is responsible. The Insurance requirements are satisfied for a launch or return authorised by a launch permit if the holder of the permit or authorisation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the holder might incur to pay compensation for any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the launch or return causes; and the Commonwealth is insured against any liability that Commonwealth might incur, 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or otherwise under international law, to pay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should be regulated in detail in Korea.

주제어 : 우주물체, 발사국, 책임협약, 손해, 연대책임, 무과실책임, 손해배상, 책임보험, 인공위성, 우주법